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구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청 및 동사무소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II. 주요골자

- 가. 주민생활지원국 신설 및 생활복지국 폐지 (안 제3조제1항)
- 나.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변경 (안 제3조제1항)
- 다.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부서 변경 및 신설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 라. 각 국장 및 소장 업무분장사항 변경. 단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은 제외
- 마. 기구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명칭 등은 부칙으로 수정

III. 검토의견

1. 배경 및 취지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생활문제가 사회복지의 과제로 대두되는 등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한편, 사회양극화 구조 심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시급한 문제 등 사회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써,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전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관련 행정조직의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지원서비스를 동사무소나 구청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06년 4월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세부계획과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위 지침 내용에 의하면 구청의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복지수요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정보제공, 심층상담, 사후관리 등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주민의 수요와 기대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써,

○ 이를 위해 종로구 등 9개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하여 46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단체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시범 자치구 : 종로, 중랑, 강북, 은평, 양천, 구로, 영등포, 서초, 송파구

2. 검토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지침(2006. 4. 19, 자치제도팀)에 따라, 현행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복지국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 주민생활계획과를 신설하는 등 국 명칭 조정과 소관 부서를 신설 또는 통·폐합하는 한편 동사무소 조직을 1주무체제에서 2팀제로 확대하여, 구 본청의 경우 5국 1담당관 23과에서 5국 1담당관 24과로 1개과가 늘어나는 등 행정기구의 개편과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재 조정한 내용으로써, (별첨 조직개편 요약 참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486호) 제6조의2 및 제10조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총 25개 실·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의 저촉이 없고, 조문 내용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현행조례의 각 조항에 대입한 내용이어서 조항별 검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취지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등 수요자를 찾아가는 능동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므로, 전남부서 및 인력 확충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로 전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 10여명 내외의 인력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의 경우 중간관리자를 포함해서 3명의 관리자가 배치됨으로써 일의 합리적 분배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므로 팀장에게도 고유업무를 부여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며, 또한 동사무소의 기능면에서도 일반행정 및 민원업무 위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된 형태로 전환된 만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연계하는 방안도 향후 시행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IV.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법률 제7957호)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486호)

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개정 2006. 4. 20>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22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23개 이내

<비 고> 3.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중 국가위임사무인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는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시·군·구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위 표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조직개편요약

현 재			변 경		
국명	과 명 칭	기구수	국명	과 명 칭	기구수
계		27	계		28
	○ 감사담당관	1		○ 감사담당관	1
행정관 리국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자치행정과 ○ 민원봉사과 ○ 문화진흥과 ○ 여권과	6	행정관 리국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업무 주민생활지원국 이관) ○ 민원봉사과 △ 소속 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 여권과	4
재 무 국	○ 재무과 ○ 세무1과 ○ 세무2과 ○ 지적과	4	재 정 경 제 국	○ 재무과 ○ 산업환경과 (← 생활복지국) - 환경위생과 환경업무 인수 ○ 세무1과 ○ 세무2과 ○ 지적과	5
생 활 복 지 국	○ 사회복지과 ○ 지역경제과 ○ 환경위생과 ○ 청소행정과	4	주 민 생 활 지 원 국	○ 주민생활계획과 (신 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능) - 지역경제과 고용정책업무 인수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기능) - 주택과 주거지원업무 인수 △ 소속변경 (→ 재정경제국) - 산업환경과로 명칭변경 △ 부서폐지 (환경업무는 산업환경과로) (위생업무는 보건행정과로) ○ 문화진흥과 (← 행정관리국) ○ 청소행정과	5
도 시 관 리 국	○ 주택과 ○ 도시계획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균형발전추진단	4	도 시 관 리 국	○ 주택과 (주거지원업무 가정복지로 이관) ○ 도시계획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균형발전추진단	5
건 설 교 통 국	○ 건설관리과 ○ 토목과 ○ 재난안전관리과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5	건 설 교 통 국	○ 건설관리과 ○ 토목과 ○ 재난안전관리과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5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 보건지도과 ○ 의약과	3	보 건 소	○ 보건위생과 (환경위생과 위생업무 인수) ○ 보건지도과 ○ 의약과	3